

「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0. 31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)

-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고,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
-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를 「평창군 명예군수」로 위촉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군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관외 인사중에서 평창군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공훈이 기대되는 사람을 평창군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자문,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제반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.

- 주요 내용을 보면,
 - 명예군수의 자격 및 위촉·해촉 절차를 마련하고,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고
 - 명예군수의 직무범위와 함께 군민이 아닌 경우 명예군민의 권리를 부여하고, 군정활동 시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관외의 저명인사를 활용하여 평창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
 - 명예군수 추천에 관한 사항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1부